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94 발의연월일: 2020. 8. 24.

발 의 자:정태호·윤관석·황운하

이장섭 • 박영순 • 박완주

김경만 • 이성만 • 신정훈

이규민 • 양기대 • 김홍걸

양향자 · 김영배 · 오기형

이광재 • 이용우 • 이수진

윤영덕 · 김주영 · 민형배

정정순 의원(22인)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 간으로 지역 일자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 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는 산업 분야 에너지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처이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중심산업구조로 되어있으므로 에너지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분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산단 에너지효율 향상과 탄소발생 저감 등을 통하여 친환경·그린산업단지를 구현할 계획임.

이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신설).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9 신설).
- 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및 지정절차를 규정함(안 제45조의10 및 제45조의11 신설).
- 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의12부터 제45조의14까지 신설).
- 마.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입주기업체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하고 규정함(안 제45조의15 신설). 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특례를 규정함(안 제45조의16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제45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4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의 혁신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제5장의3을 제5장의4로 하고, 제45조의9부터 제45조의20까지를 각각 제45조의17부터 제45조의28까지로 하며, 제5장의3(제45조의9부터 제45조의1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관리, 사업추진체계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할 수 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추진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 2.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 4.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등 지 능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

- 5. 산업단지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 및 관리기관(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1.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기업환경 개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할 것
 - 2. 산업단지의 입지현황 등 여건이 산업단지 제조혁신 등을 위한 지 능정보기술 활용에 적합할 것
 - 3.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4. 입주기업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

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확충이 필요할 것

- 5.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 6.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시급할 것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대상 산업단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 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5조의1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①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이하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 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9조의17에 따른 공단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①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단지 기반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정보(이하 "산업단지 데이터"라 한다)를 정보 보유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가공·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① 제45조의11제1 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제45조의2제4항제2호 에도 불구하고 전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30까 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일정 면적에 대하여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및 시설에 관하여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 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본다.
 - ④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으로, "국가시범도시"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본다.

제45조의17(종전의 제45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제45조의13"을 각각 "제45조의21"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의14"를 "제45조의2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5조의19"를 "제45조의27"로 한다.

제45조의18(종전의 제45조의10)제1항제3호 중 "제45조의20"을 "제45조의28"로 한다.

제45조의21(종전의 제45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5조의9제1항"을 "제45조의17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관리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 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제45조의22(종전의 제45조의14) 중 "제45조의13"을 "제45조의21"로 한다.

제45조의25(종전의 제45조의17)제1항 중 "제45조의13제1항"을 "제45조의21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의28(종전의 제45조의20)제1항 중 "제45조의13"을 "제45조의21" 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0호 중 "제45조의9제3항"을 "제45조의17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스마트산업단지는 이 법에 따라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 본문 및 단서 중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다.

④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u><신 설></u>	14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
	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
	로서 제45조의11에 따라 지정
	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u><신 설></u>	14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
	진사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
	터, 클라우드컴퓨팅 등「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
	정보기술"이라 한다)을 접목하
	여 제조공정의 혁신 등 주력산
	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
	<u>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재생</u>
	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
	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5. ~ 23. (생 략) 15. ~ 23. (현행과 같음)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①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현행과 같음)

- 1. ~ 5. (생략)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상공회의소 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 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 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시·도지사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u>제45</u> 조의 <u>17</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
성지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관
리, 사업추진체계 및 스마트그
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

적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할 수 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산업단지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받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 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추진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 2.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 4.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에관한 사항
- 5.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u>방안</u>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받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 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6조부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제2조제16호 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 및 관리기관(제2조제17호에 따 른 관리기관을 말한다)과 협의 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신 설>

관은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 과를 토대로 스마트그린산업단 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 1.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기

 업환경 개선, 환경친화적 산

 업구조 전환이 필요할 것
- 2. 산업단지의 입지현황 등 여
 건이 산업단지 제조혁신 등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적
 합할 것
- 3.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4. 입주기업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 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단지 기반 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확충이 필요할 것
- 5.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 6.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시급할 것

-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평가대상 산업단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 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 ・단체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를 지정하였을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1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① 제45조의14에 따 른 사업시행자는 스마트그린산 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이하 "스 마트그린산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 설>

<u><신</u> 설>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 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스마 트그린산단계획을 승인한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9
 조의17에 따른 공단에 사업단
 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은 단 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 성하며, 사업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스마트그

<u>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u>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① 제45조의14에 따른 사 업시행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 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 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단지 기반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 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산업단지 데이터"라 한다)를 정보 보유 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 가공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① 제45조 의11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제45 조의2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까지 구조고 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 트그린산업단지 중 일정 면적 에 대하여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및 시설에 관하여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본다.

④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하

제5장의3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 등) ① ~ ③ (생 략)

- ④ 공단은 제45조의13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달한다.
- 1. (생략)
- 2. 제45조의13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 3. 제45조의14에 따른 차입금 3. 제45조의22-----
- 4. 제45조의19에 따른 채권의 4. 제45조의27-----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5. (생략)
- ⑤ (생략)

제45조의10(정관) ① 공단의 정관 제45조의18(정관) ① -----

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 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기관등"을 "스마트그린산업단 지 촉진사업의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국가시범 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촉진사업"으로, "국가 시범도시"를 "스마트그린산업 단지"로 본다.

제5장의4 한국산업단지공단 제45조의9(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 ④ -----제45조의21-----
- 1. (현행과 같음)
- 2. 제45조의21-----

- 5.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 함되어야 한다. ----

- 1. 2. (생략)
- 3.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지부 (支部), 연수원, <u>제45조의20</u>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 11. (생 략)

② (생략)

제45조의11(임원 등) (생 략)

<u>제45조의12</u>(이사회) (생 략)

- 제45조의13(사업) ① 공단은 <u>제45</u> <u>조의9제1항</u>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 11의2.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제45조의14(자금의 차입) 공단은제45조의13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

1.•2. (현행과 같음)
3
<u>제45조의28</u> -
4.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45조의19</u> (임원 등) (현행 제45
조의11과 같음)
<u>제45조의20</u> (이사회) (현행 제45조
의12와 같음)
<u>제45조의21</u> (사업) ① <u>제45</u>
<u> 조의17제1항</u>
1. ~ 11의2. (현행과 같음)
11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
<u>정·관리 및 스마트그린산업</u>
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u>업무</u>
② ~ ⑤ (현행과 같음)
<u>제45조의22</u> (자금의 차입)
제45조의2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5조의15(비용부담) (생략) 제45조의23(비용부담) (현행 제45 조의15와 같음) 제45조의16(예산과 결산) (생 제45조의24(예산과 결산) (현행 략) 제45조의16과 같음) 제45조의17(업무의 지도・감독) 제45조의25(업무의 지도・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5 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공 조의21제1항-----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18(출연 및 보조금) (생 제45조의26(출연 및 보조금) (현 행 제45조의18과 같음) 략) 제45조의19(채권의 발행) (생 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현행 략) 제45조의19와 같음) 제45조의20(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45조의28(산하기관) ① ------제45조의13의 사업을 효율적으 제45조의21-----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 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 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 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9. (생 략)
- 10. <u>제45조의9제3항</u>을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1. (생략)
- ③ (생 략)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9. (현행과 같음)
10. 제45조의17제3항
11.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